

라. 기 타

- 1) 입법예고: 고성군 공고 제2023-762호
 - 가) 예고기간: 2023. 5. 2. ~ 2023. 5. 22.(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5) 비용추계서: 붙임

5. 본 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개정 목적

-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및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흡한 사항 등을 개선·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 검토

구 분	주요 내용	비고
안 제3조의2 (구성 및 임기)	· 위촉직 위원 중복 위촉범위 정비 (5개 초과 → 3개 초과)	· 적정(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지구 수정 · 수수료 납입방식 신설(②)	· 적정(납입 방식 다양화)
안 제41조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	·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기준 신설	· 적정(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필요사항 반영)
안 제42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근거 신설 · 재원 조성 및 사용기준 신설	· 적정(상위법령 위임에 따른 필요사항 반영)

참고]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23. 2. 24. 제정)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하 생략)

○ 종합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근거를 마련한 고성군 건축안전센터의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7. 12. 원안가결 함.